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94

발의연월일: 2024. 7. 8.

발 의 자: 박수영·백종헌·안철수

곽규택 • 서일준 • 정성국

김상훈 • 배현진 • 김대식

권성동 • 조지연 • 정희용

김승수 · 강승규 · 박형수

조승화 · 서천호 · 이종배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반도체산업은 국가 및 경제 안보에 핵심적인 요소로서, 스마트 운송, 의료 기기, 농업 효율성, 기후 위기 대응, 국방 역량 강화 기술을 비롯한 미래 혁신 분야 대부분이 반도체 기술에 의존하고 있음. 지난 70년간 반도체 기술 부문 혁신이 괄목할 만한 속도로 진행되었는데, 과거 소수의 트랜지스터를 실리콘에 얹던 방식에서 오늘날은 웨이퍼 한 장에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하는 수준으로 발전함에따라 신규 분야의 고성능 반도체 수요 발생으로 설계 및 생산 부문의복잡성이 증대되면서, 혁신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비용 또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 기업의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점유율이 점차 축소되고 있고, 후공정 분야, 팹리스, IP기업, 디자인하우스 등 연관 생태계 분야에서의 우리 기업 점유율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반도체 밸류 체인의 핵심적인 소재·장비 역시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급증하는 전문인력 수요 대비 절대적 인력 규모와 역량도 부족한 실정임. 각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 기업이 경쟁력 우위에 있는 첨단기술 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반도체 인력의 이직을 통한 기술유출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음.

첨단산업 기술력과 제조능력은 글로벌 패권의 향방을 좌우하는 '비대칭 전력'이자 국가 방위 역량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에서 첨단산업의 중추인 국가반도체산업은 산업 그 이상의 전략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음.

이에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국가적 의제로 격상하고, 자국 중심 국가반도체산업 공급망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 상자원부 산하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수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495호)의 의결을 전제로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본문 중 "제38조제2항"을 각각 "제38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2항 · 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1명"을 "2명"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반도체산업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
직 등) ① ~ ④ (생 략)	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행정각부에는 대통령령으로	5
정하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장	
관과 차관(제34조제3항 및 <u>제3</u>	
<u>8조제2항</u> 에 따라 행정안전부	<u>8</u> 조제2항 • 제3항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	
부장을 포함한다)을 직접 보좌	
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제29조제2항ㆍ	
제34조제3항 및 <u>제38조제2항</u> 에	제38조제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	<u> 2항 • 제3항</u>
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ㆍ차	
장・실장・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	
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상	
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	
는 부렁으로 정할 수 있다.	

- ⑥ ~ ⑩ (생 략)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저 ① (생 략)
 - ② 차관(제29조제2항·제34조 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 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또는 차장(국무조정 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 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 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 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 행한다.

③ ~ ⑤ (생 략)

제10조(정부위원) 국무조정실의 지실장 및 차장,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

·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38조제2항ㆍ제3항</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정부위원)				

국장 및 차관보와 제29조제2항 • 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생 략)

<u><신</u>설>

- ③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보 1 명을 둘 수 있다.
- <u>④</u>· <u>⑤</u> (생 략)

	<u>제38조제2항</u>
<u>• 제3항</u>	

- 제38조(산업통상자원부) ① ② 제38조(산업통상자원부) ① ② (현행과 같음)
 - ③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반도 체산업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 <u>로 한다.</u>
 - **4** -----2 명----.
 - <u>⑤</u> · <u>⑥</u> (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